

『더불어 성장하며 창의적으로 꿈을 펼치는 행복한 학교』

# 시흥신일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시 흥 신 일 초 등 학 교

# 특례에 의한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시흥신일초등학교「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시흥신일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

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법으로 정한 온라인, 모바일 등의 메신저, 플랫폼 사용 지도, 특별 사유 없이 학습활동 거부 및 불이행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7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연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 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 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 단으로부터의 분리 포 함)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언어적 다 툼으로 수업을 방해하 는 경우 또는 ② '2호'에 따른 지도 에도 행동 개선이 없 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 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 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지 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행동 개선을 위한 상 담 및 추가 과업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 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지 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유사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2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시흥신일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시흥신일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의의】**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과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또한 학생은 학교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규범 준수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1~6,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규정한다.

##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안전진로부장(인성인권교육담당 교사)로 하고,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조치 내용은 가장 최근에 마련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는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5.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 한다.
7.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재심에 대한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여 신청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를 유보한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제출을 서면 및 참석 등을 통하여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한다.
9.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10. 그 외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5조【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3장 학생 생활

### 제1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p>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p>
<p><b>제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li> <li>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ol>
<p><b>제8조【표현의 자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li> <li>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3.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게시 방법은 A4 규격 이상의 종이를 1층 혹은 3층 게시판 장소에 게시를 하며, 학생자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li> <li>4.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li> <li>5. 학생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li> </ol>
<p><b>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li> <li>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li> </ol>
<p><b>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li> <li>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li> </ol>
<p><b>제11조【교우관계】</b>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p>
<p><b>제12조【양성존중】</b>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li> <li>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li> <li>3.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li> <li>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li> </ol>
<p><b>제13조【폭력예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li> <li>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방향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폭력 신고함 활용 및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li> <li>②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li> <li>③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 회의 개최 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이관 여부 결정</li> <li>④ 중대한 사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li> <li>2) 재산상 피해가 있고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li> <li>3)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li> <li>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li> <li>5)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li> <li>4.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실시해야 한다.</li> <li>5.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li> <li>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2(장애학생의 보호)에 따라 가해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심의과정에서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li> <li>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li> </ol>
<p><b>제14조【동아리활동】</b>방과후 학교와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li> <li>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두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li> <li>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li> <li>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li> </ol>
<p><b>제15조【여가활동】</b>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li> <li>2. 여가시간에는 도서실,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li> <li>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li> </ol>
<p><b>제16조【용의복장】</b>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복장은 학생에 어울리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에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li> <li>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li> <li>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에 어울리는 것으로 착용한다.</li> <li>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에 어울리는 것으로 한다.</li> <li>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li> <li>6.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선블록, 비비크림, 입술보호용 틴트 등)을 하거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지나친 색조 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일부 제한할 수 있다.</li> </ol>
<p><b>제17조【소지품검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은 교과 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휴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ライター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 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 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생 스스로 자율적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3.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필요 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①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④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연중 20일 이내 한해서 출석으로 처리한다.(공휴일 미포함)
  -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 3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제21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2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23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4조【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 제25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하고, 학생 간에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드리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9.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li> <li>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li> <li>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li> </ol>
<p><b>제27조【통학버스 이용】</b>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안전에 유의하며, 동승보호자 및 운전원,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도에 다음과 같이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질서를 고의로 위반하는 학생이나 승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 또는 통학버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통학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li> <li>2. 이용 학생 및 학부모는 통학버스 승하차 및 운행 중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와 승무원의 지시 및 통학버스 내의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li> <li>3. 이용 학생 및 학부모는 통학하는 학생들의 질서 위반행위와 학교 및 승무원의 지시 불이행 및 통학버스 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li> <li>4. 이용 학생은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서 승(하)차해야 하고,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시각 및 장소 변경은 불가하며, 만약 변경을 원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탑승 못할 시 개별 등하교)</li> <li>5. 악천후,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개별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주지한다.</li> <li>6. 이사, 전출, 이용 중단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알리도록 한다.</li> </ol>
<p>제3절 정보 통신</p>
<p><b>제28조【사이버 생활】</b>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li> <li>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li> <li>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li> <li>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li> <li>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li> <li>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li> <li>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li> </ol>
<p><b>제29조【통신기기 관리】</b>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li> <li>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 한다.</li> <li>3.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 활동이나 학생 생활교육, 개인 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li> <li>4.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사는 휴대폰은 보관 후,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 전화를 돌려주고,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li> <li>5. 휴대전화, 통신기기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시흥신일초등학교 특례에 의한 생활인권규정’ 제3장【생활지도 방식】에 따른다.</li> </ol>
<p><b>제30조【정보공시 규정】</b> (자기정보 결정권) 학생이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 권리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li> <li>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li> </ol>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b>제4절 학생자치회</b>
<b>제31조【회원】</b>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b>제32조【권리 및 의무】</b>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한다.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은 없으나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제33조【금지활동】</b> 삭제
<b>제34조【협의.지원사항】</b>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b>제35조【승인】</b>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b>제36조【학급자치회 임원】</b>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b>제37조【부서】</b> 학급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습부 : 자율학습 계획, 점검, 지도 2. 생활부 : 실내외 생활지도, 기본질서 활동 3. 보건체육부 : 건강과 체력 증진 활동계획 및 추진 4. 환경부 : 학교 청결, 미화를 위한 활동, 미화상황 점검 등 5.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6. 홍보부 : 학급 소식 자료 수집, 홍보, 학급게시판 활용 7. 도서부 : 학급 도서의 대여, 수합, 정리 정돈 8. 신문부 : 학급 신문발간, 학교의 여러 가지 소식
<b>제38조【직무 및 선출】</b> 1.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급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b>제39조【전교학생자치회】</b>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 ① 회장(6학년 1인), 부회장(6학년 1인, 5학년 1인) 및 4~6 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①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의 심의 및 처리 ②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처리

-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3. 회의
  - ① 전교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지도교사에게 알리고 이를 소집한다.
  - ③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0조【자격제한】학생자치 임원 자격 제한은 없다.

제41조【임원의 해촉】학생자치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42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협력하여 활동한다.
- 6.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3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5조【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지도 방안】다음과 같이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위반되어 교육목적성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따라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다.

문제행동유형	구체적 사례	대처 방안	비고
1. 교사의 지도·훈계에 불응	· 상담 및 지도 거부 행동 · 교사 지도에 침묵으로 일관 · 교사 지도에 거칠게 반항 · 교사에 대한 모욕과 폭력	1단계 구두 경고 2단계 성찰문 쓰기 3단계 학부모 상담 4단계 담임상담 5단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회부	
2. 학습태도 불량	· 지속적인 학습시간 중 소란 · 타 학생의 권리 침해(학습권) · 지속적인 학습태도 불량 · 상습적인 학습과제 미해결	1단계 구두 경고 2단계 성찰문 쓰기 3단계 방과 후 학습과제 해결하기 및 보충 지도	

	.상습적으로 숙제나 준비물을 안하거나 안 챙겨 올 때	4단계 학부모상담	
3. 집단 따돌림	.고의로 급우를 따돌리는 행위 .집단을 만들어 다른 급우에게 공포감 조성 .따돌림으로 인해 급우에게 심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1단계 구두 경고 2단계 성찰문 쓰기 3단계 학생 상담, 학부모 전화 상담 4단계 학부모 방문 상담, 자녀 지도 계획서 제출 5단계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부	
4.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핸드폰을 이용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예.촬영후 배포)	1단계 구두경고 2단계 담임상담 및 성찰문 쓰기 3단계 학부모 통보 및 가정 지도 연계 4단계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부	
5. 흡연, 약물, 오남용	. 흡연을 하는 경우 . 본드, 음주, 약물 과다복용	1단계 담임상담 및 학부모 통보 2단계 보건교사 상담 3단계 학부모 통보 및 가정 지도 연계 4단계 전문 상담프로그램 이수	
6. 미인정 결석 및 결과	. 미인정 결석, 결과	1단계 성찰문 쓰기 2단계 학부모 전화 상담 3단계 학부모, 학생, 교사 상담 4단계 가정방문(2일 이상 미인정 결석 시) 5단계 주민센터, 경찰서 연계지도	
7.교우에 대한 폭행, 갈취	.타인의 물건(핸드폰, 돈, 물건 등)을 빌려가서 안돌려 주는 경우 .상습적인 폭행, 폭언 .상급생의 하급생에 대한 공포감 조성	1단계 교사 상담 2단계 학부모 통보 및 가정 지도 연계 3단계 학부모 상담 4단계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부	
8.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타인의 물건 및 금품을 훔치는 경우 .학교의 비품이나 교실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학교이외의 사업장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함 1단계 교사 상담 2단계 학부모 통보 및 가정 지도 연계 3단계 학부모 상담 4단계 전문 상담프로그램 이수	
9. 기물 파손	.학교 공공시설의 물건을 고의적 파손 .학교 공공시설 및 타인의 물건 파손	*고의적인 파손은 기본적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함. 1단계 교사 상담 2단계 학부모 통보 및 가정 지도 연계 3단계 학부모 상담 4단계 전문 상담프로그램 이수	
10. 성폭력	.성추행(성폭력) .불법 촬영 및 배포 등	*성폭력의 개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부록3에 따름.  단계별 조치없이 수사기관 신고 및 학교장 보고 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회부	
<b>제46조</b> 대처 방안 중 봉사활동 내용은 각급 학년에 맞게 담임교사와 동학년 교사 및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b>제47조</b>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와 관련된 필요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거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b>제48조【보호자의 책임】</b>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경제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 지도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b>제49조【학업중단 예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li> <li>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li> <li>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li> </ol>
<b>제50조</b>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과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제1장(총칙), 제2장(생활지도의 범위), 제3장(생활지도의 방식)이 우선한다.
제2절 시상
<b>제51조【종류】</b>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범부문 - 모범어린이상 등</li> <li>2.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li> </ol>
<b>제52조【시기】</b>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b>제53조【외부로부터의 시상】</b>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5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b>제5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i> <li>2. 본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li> <li>3. 본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교직원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li> <li>4. 본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li> <li>5. 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외에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li> <li>6. 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li> <li>7.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li> <li>8.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li> <li>9. (학교생활인권규정 공시)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 내용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li> </ol>
제6장 개정 방법
<b>제55조【개정방법】</b>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개정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본 규정 제51조에 따른다.)</li> <li>2. 제·개정안 발의(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한다.)</li> <li>3.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학생자치활동,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토론 등 상황에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li> </ol>

4. 제·개정 시안 마련(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개정 시안을 마련한다.)
5. 규정개정 심의 위원회 심의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이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7. 학교장 결재
8. 공포 및 보고
9. 제·개정 규정 안내
10. 적용 및 환류

####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1차개정】**본 개정안은 201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2차개정】**본 개정안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3차개정】**본 개정안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4차개정】**본 개정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5차개정】**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6차개정】**본 개정안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7차개정】**본 개정안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8차개정】**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9차개정】**본 개정안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10차개정】**본 개정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5>추후 서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식 1 >

## 성찰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 호 자	※말씀:	담임	생활인성교육부장
	성명 :	( 사인)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4 >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6 >

##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시흥신일초등학교장 (직인생략)